

〈韓日合同 Symposium〉

國際技術協力上의 契約紛爭處理와 仲裁에 關하여

Contract Dispute Treatment and its Arbitration on
Technology Collaboration in Internationally

延世大工大講師 金 旬 根*

ABSTRACT

This is to intent of new proposal for organizing the technology arbitration organization in internationally instead of the existing organization for business & trading matters such as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because of to be keeped the major matters in relation with technology by professional engineers as for their own engineering jobs and also develops of their own knowledges without assisting of any expert for the laws.

目 次

- | | |
|---------------------------|-----------------------|
| 1. 序 言 | 4. 韓國과 日本의 仲裁標準條項 |
| 2. 韓國의 仲裁機關發達現況과 日本의 仲裁制度 | 5. 獨立된 國際技術仲裁機關創設의 促求 |
| 3. 國際技術協力과 國際仲裁機關의 現況 | 6. 結 言 |

1. 序 言

第12次 韓日合同技術士會(82.2.25. 서울開催)에서 「國際技術協力を 위한 專門技術士의 새 役割促進方案」(A Reinforcement Proposal of quite new roles by Professional Engineer for International Technology Collaboration)이라는 題目下에 韓·日間協力下에 東南亞技術移轉에 必要한 國際技術契約上의 標準約款作成促求를 提議한바 있으며, 이번에 提案하는 것은 그 繼篇으로서 技術仲裁을 專擔하는 國際機構를 韓·日間부터 始作하여 汎世界로 波及되는 機構로 發展시키고자 하는 構想案이다.

그러나 專門技術士의 基本役割은 科學技術에 關한 高度의 專門的 應用能力을 遂行하는 過程에 있어서 더우기 國際間의 技術協力上 隨伴하게 誘發되는 契約紛爭이 日益增加一路에 있으나 韓國은 日本技術士法(1957年 制定)을 模倣하여 1963年 技術士法制定에서 發展하여 國家技術資格法(1973年 12月制定公布)에 이르렀으나, 西歐와 같은 엔지니어의 本質的機能中 仲裁人(Arbitrator)과 代理人(agent)役割을 法上定義에서 明記하지는 않았다하드래도 國際技術協力에는 特히, IBRD, ADB借款事業等에는 役割을 하고 있고, 이것을 본받게 되어 모든 國際間의 技術協力事業에는 慣例化되어 있는 實情에 있으므로 우리 兩國도 西歐와 같은 엔지니어의 本質的 役

割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2. 韓國의 仲裁制度發達現況과 日本의 仲裁制度

우리 나라에 있어서 仲裁制度가 發足하게 된 것은 1966年 3月 16일에 全文 18條 附則으로 『仲裁法』이 公布施行된 때부터이다. 이 仲裁法制定의 主原動力은 政府機關이 아닌 大韓商工會議所가 國際商去來의 增大와 함께 그 必要性을 切感하여 制定된 것이고, 當時 우리 나라의 貿易去來活動이 活發해짐에 따라 必然的으로 많은 去來上의 紛爭을 隨伴하게 되어 外國業者로부터 claim의 提起頻度가 增加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에 對處하기 위하여 先進諸國에서 널리 活用되고 있는 商事仲裁制度를 導入함에 앞서서 그 先行條件으로 法的基礎를 이루는 仲裁法의 制定이 時急히 要望되었다.

이리하여 大韓商工會議所가 主動이 되어 草案作成案된 것을 法制處를 거쳐 政府案으로서 國會에 提出되며 立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리하여 仲裁法이 公布施行되면서 우리 나라 大韓商工會議所附設 國際商事仲裁委員會라는 仲裁法庭이 생기게 된 것이다. 仲裁法庭이 設立되면서 具體的인 紛爭에 대한 仲裁判定에 이르는 節次의 細則인 仲裁規則은 全文 62條 附則으로 制定하였고, 1966年 10月 13日 制定분은 1973年 2月 17日 改正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나라의 仲裁法과 日本의 民事訴訟法(1980年法律第29號로서 仲裁의 法的根據는 第786~805條)에는 外國仲裁判定의 承認·執行에 관하여 規定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該當規定을 두고 있지 아니한 우리 나라와 日本에 있어서도 涉外私法上의 原則에 의하여 外國仲裁判定이 그 準據法上 有效하고 拘束力이 發生하고 있는 以上國內의 公秩序에 違反하지 않는限 當然히 承認·執行이 認定되는 것이다.

1668年 3月에는 우리 나라도 外國仲裁制度의 承認과 執行에 관한 「外國仲裁制度의 承認 및 執行에 관한 UN協約(1958年 6月 10일의 New York Convention)」의 加入을 위한 大統領의 署

名을 받았고, 1973年 1月 30일에 非常國務會議에 批準(ratification)을 받아 同年 2月 8일 加入文書(instrument of accession)를 國際聯合事務總長에게 寄託(edposit)함으로서 同年 5月 9일 同協約이 우리 나라에 대하여 發效하게 되었다.

(※日本도 上記 協約에 加入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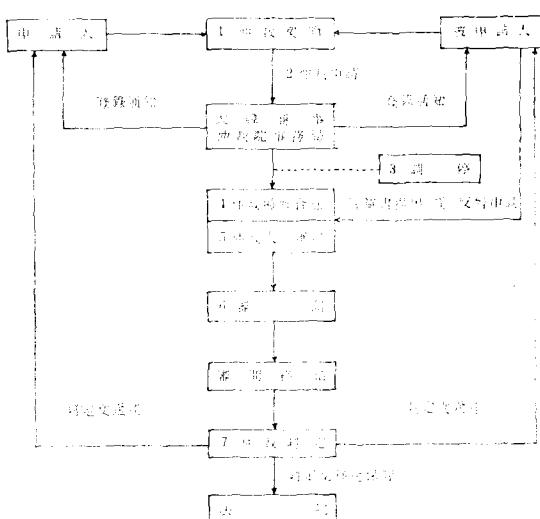
이리하여 우리 나라의 仲裁制度는 名實共의 國內外의으로 公認된 商事紛爭機構로서 갖추게 되었다.

이 外에, 國內에는 1981年 3月 31日 言論仲裁委員會가 發足되어 西歐의 先進國처럼 「市民과 言論間의 對話를 通한 言論仲裁를 하는 窓口役割로서」 年間 30餘件以上的 言論仲裁申請을 處理하고 있다.

또 技術仲裁에 關하여는 韓國의 技術士會와 技術用役協會가 中心이 되어 西歐와 같이 獨立된 (商事仲裁에서) 機構를 創設할 것을 現在檢討中에 있다.

大韓商事仲裁院에서 施行하고 있는 商事仲裁의 節次는 그림-1과 같다.

(그림 1) 仲裁節次進行案内



参考로 적으면 日本에는 3個의 仲裁機關이 있는데 (i) 日本海運集會所(Japan Shipping Exchange Inc.)라 稱하여 런던海運去來所를 模倣하여 1921年에 設立하여 海事紛爭을 專擔處理할 仲裁部署를 두게 되었다. (ii) 日本海運集會所는 海事仲裁規則과 海事仲裁委員會의 規則(1962.)

을 準用하고 있다. (ii) 日本國際商事仲裁協會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는 1950年 美國仲裁協會(A.A.A.)를 본따서 日本商工會議所에 依하여 設立되어 國際貿易紛爭의 解決을 專擔하고 있다.

이 協會는 1971年 2月 1日부터 施行된 商事仲裁規則(日本語 및 英語共用)

協會의 仲裁人團(Panle of Arbitrators)은 1978年 5月 31日 現在 多國籍専門職人士들로 205名에 이르고 있다.

(表 1) 日本國際商事仲裁協會의 仲裁人構成表

國籍別	人員數	專門職別	人員數
日本	174名	實業界	87名
美國	12名	法曹界	97名
獨逸	7名	學界	21名
英國	6名		
瑞西	3名		
佛國	1名		
伊太利	1名		
뉴질랜드	1名		
計	205名	計	205名

(iii) 建設工事紛爭과 解決에 관한 中央 및 地方調停委員會 建設業에 관한 法(1949年 法第100號)은 第3—2章 “建設工事 契約에 관한 紛爭解決(第25~25—4)”에서 建設工事로부터 發生하는 紛爭의 解決을 위하여 詳細한 規定을 두고 있다.

同法第25條에는 建設工事契約에서 發生되는 紛爭은 仲裁·調停 또는 幹旋에 依하여 解決하도록 하기 위하여 建設工事紛爭解決에 關한 調停委員會의 設置根據를 規定하고 있다.

따라서 建設工事紛爭의 解決에 관한 地方調停委員會는 東京都·北海道·大阪·京都外 43個懸에 1個式을 두고 있다. 建設工事紛爭에 관한 中央調停委員會는 建設省에 設置되어 있으며, 同中央調停委員會는 여려 地方調停委員會와 共存을 하면서도 이들이 上級審이 아니며 仲裁規則도 서로 獨立的으로 갖고 있다.

3. 國際技術協力과 仲裁機關의 現況

3.1. 國際技術協力과 不公正指摘事項

1981年 4月에 發效된 獨點規制 및 公正去來法에 依據하여 不公正指摘事項은 다음의 8個事項을 主로 하여 國際契約의 不平等함을 是正한 바 있다.

- (1) 輸出地域制限
- (2) 損害賠償請求不能
- (3) 契約期間滿了後, 技術使用制限
- (4) 部品購入先指定
- (5) 改良技術의 一般的提供
- (6) 廣告, 販賣窗口 및 價格制限
- (7) 不當한 技術料(Royalty) 賦課
- (8) 一定水準의 市場占有率의 維持要求

公正去來法發效後 1981年 4月부터 1983年 3月 31日까지 技術導入 582件, 借款 60件, 合作投資 55件 等 合計 697件의 國際契約이 當國의 許可를 받기 위해 申告되었으나, 其中 38.9%에 該當하는 326件의 不公正去來條件을 담고 있는 不平等契約이 있다고 한다.

3.2. 國際契約上의 國內에서의 商事仲裁判定

大韓商事仲裁院이 集計한 國際契約上의 商事仲裁申請을 받아서 判定에 이른 事例를 主要業務內容別로 分類하면 표-2와 같다. 其中 技術導入關係로 仲裁判定된 外國의 事例一件은 日本과의 Royalty 支拂關係였는 것이다.

(表 2) 國際契約上의 商事仲裁判定件數事例表

業務容內	國內의 會社間 關係	外國과의 關係	合計
品質不良事例	5	19	24
契約違反事例	5	15	20
其他違反事例	4	4	8
建設工事 및 技術導入	2	1	3
合計	16	39	55

* 期間: 1968年 4月 申請부터 1982年 1月 判定까지의 事例

3.3. 國際商事仲裁機關과 西歐의 仲裁制度概要

主要한 國際商事仲裁機關은 표-3과 같다.

西歐의 美·英·獨三個國의 大略的인 仲裁制度는 다음과 같다.

美國：全國統轄組織 또 美國仲裁協會(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A.A.A)가 1926년에 設立되어 美國唯一의 仲裁機關으로서 美國全域에 亘한 仲裁를 掌握하고 있다.

이 團體는 非營利私 的團體로서 構成會員은 各種 會社, 勞組, 業協會, 法律事務所와 個人으로 되어 있다.

仲裁節次 또는 聯邦仲裁法, 州仲裁法, 州仲裁法이 없는 곳도 Common law에 따라 그節次가 進行된다.

建設工業仲裁에 關하여는 1966年까지는 美

國建築士協會 標準約款(AIA 約款)에 따라 제각기 當事者가 一人의 仲裁人을 選擇하여, 그二人의 仲裁人이 第三者的 中立的 仲裁人을 뽑거나 或은 仲裁人 全員을 商事規則(Commercial Rules)에 따라서 A.A.A.가 定하거나 어느 方法에 依해서나 仲裁人을 定해왔으나 이方法으로는 當事者에게서 選出된 仲裁人이 單獨적 傾向으로 놓이게 되며 缺陷이 많아서 1976年 「建設業 仲裁規定(Construction Industry Arbitration Rules)이라는 統一規則이 생겨서 오늘날에는 建設業界의 大部分이 이 規則에

(表 3) 國際商事仲裁機關一覽表(SGK)

國名	仲裁機關名稱	關係當事國	備考
國際機關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워싱턴(美), 가본, 상이 해안 자마이카, 모로코	1966年 設立
"	The Center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C.C.)	파리(佛), 74會員國(英國 만이 원치 않음)	1923年 設立
韓國	大韓商事仲裁院	서울	1980年 設立
オース트리아	The Arbitral Center of The Federal Economic Chamber		1974年 設立
西獨	Hamburg Friendly Arbitration	합부르크	1904年 設立
日本	國際商事仲裁協會(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J.C.A.)	東京	1953年 設立
英國	London Court of Arbitration (L.C.A.)	런던	1982年 設立
美國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	뉴욕	1926年 設立
和蘭	The Netherlands Arbitration Institute	롯데남	1949年 設立
伊太利	Association Italiana Per L Arbitrato	로마	1958年 設立
印度	The Indian Council Arbitration	뉴델리	1963年 設立

따르고 있다.

英國：美國과 같이 統一的 仲裁機關이 없고 또 統一된 仲裁規定이 없는 것이 큰 特徵이다.

그 主된 機關은 다음과 같다.

- ① 王室建築士協會(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RIBA)
- ② 土木技師協會(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I.C.E.)
- ③ 構造技師協會(Institute of Structural Engineers=I.S.E.)
- ④ 王室公認積算士協會(Royal Institution of Chartered Surveyors=RICS)
- ⑤ 仲裁人協會(Institute of Arbitrators)
- ⑥ 런던仲裁判所(London Court of Arbitra-

tion)

⑦ 住宅建築會議(National House Building Council) 이외한 機關에 依存치 않고 紛爭을 解決하고 있는 實例도 많다.

西獨：仲裁에 關聯되는 機關은 美·英國과 같이 私的機關이다. 各種業協會, 聯合會, 商工會議所等이 仲裁節次에 關한 細則을 作成하고, 仲裁人名簿를 準備하여 仲裁에 關한 事業을 執行하고 있다. 例컨대, 建設工事에 關한 紛爭에는 西獨콘크리트 建設業會(Deutscher Betonverein E.V)와 西獨建設法 專門家團體(Deutsche Gesellschaft fur Baurecht E.V)가 共同으로 「建設工事仲裁規則(Schiedsgerichtsordnung fur das Bauwesen)을 制定하여, 그 仲裁人

候補者名單을作成하고 있다.

當事者の合意에 따라 「建設工事仲裁規則」에依한다고定하면 民事訴訟法(Zivilproze Bordnung)外에 이規則에 따라仲裁가執行된다.

仲裁契約에仲裁人에關하여規定이 없으면各當事者は一人의仲裁人을選定하게되어있다. (民訟法第1028條그러나實地또는三人의仲裁人을쓰는경우가 많고, 이第三仲裁人(Ohmann)은大學卒, 司法試驗合格者(辯護士或은判事)라야한다.

4. 韓國과 日本의 仲裁標準條項과 技術仲裁上의 問題點

仲裁는仲裁節次를管理하는仲裁機關에의하여수행되는데, 이러한仲裁機關으로는臨時的·裁機關(ad hoc arbitration)과常設的仲裁機關이 있으나 어느 기관에의한것이든仲裁判定의效力面에는차이가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國際貿易紛爭의處理에는仲裁判定節次에관한事務遂行能力面에서常設仲裁機關이臨時仲裁機關보다efficiency의이므로 이를利用하는경향이크다. 어느方式의仲裁를利用하던간에仲裁의基本的要件은紛爭當事者間의仲裁契約(institutional arbitration)이있어야하는데이는반드시書面에作成되어야한다.

仲裁契約은賣買契約書作成時에仲裁에關한條項을設定하여插入한仲裁條項(arbitration clause)과紛爭이발생한후에 이를仲裁로써解决하기로合意하는事後合意(submission agreement)로나눌수있다.

참고로大韓商事仲裁協會가추천하는標準仲裁條項과韓·日仲裁協定과韓·美商事仲裁協定 그리고日本國際商事仲裁協會에서추천하는仲裁條項을여기에紹介한다.

① 大韓商事仲裁協會가推薦하는標準仲裁條項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is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and under the laws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契約으로부터, 또는이契約과關聯하여또는이契約의不履行으로말미암아當事者間に發生하는모든紛爭, 論爭또는意見差異는大韓民國서울特別市에서大韓商事仲裁協會의商事仲裁規則및大韓民國法에따라仲裁에의하여最終적으로解決한다.仲裁人(들)에의하여내려지는判定은最終的인當事者雙方에대하여拘束力を가진다.

(i) 韓美商事仲裁協定에서勸告하는仲裁條項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pursuant to the U.S.-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Agreement of December 1, 1974, by which each party here to is bound.

「이契約으로부터또는이契約과關聯하여또는이契約不履行으로말미암아當事者間に發生하는모든紛爭, 論爭또는意見差異는1974年12月1日字韓·美商事仲裁協定에따라仲裁에의하여最终적으로解决하여當事者들은이에拘束을받는다.

(ii) 韓·日仲裁協定에서勸告하는仲裁條項

All disputes that may arise under or in relation to this Contract shall be submitted to arbitration under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a)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if the arbitration is to be held in the Republic of Korea (b) 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if the arbitration is to be held in Japan.

If the place of arbitration is not so designated by the parties or is not agreed by them within 28 days from the date on which a demand for arbitration is received by either of

the Associations from either party, the place of arbitration shall be the country of the Respondents. Provided that both Associations may agree, on the application of either party to either of the Association, or either party to either of the Association, that the place of arbitration shall be the country of the claimants, such agreement between the Associations within 28 days from the date of the said application, the place of arbitration shall be the country of the Respondents.

“이[契約으로] 부터 또는 이[契約에] 關聯하여發生하는 모든 紛爭은 (a) 仲裁가 韓國에서 行하여지게 되는 경우에는 大韓商事 仲裁協會에서 또한 (b) 仲裁가 日本에서 行하여지게 되는 경우에는 (日本) 國際商事仲裁協會의 商事仲裁規則에 依據하여 仲裁에 付託할 것으로 한다.

仲裁場所가 當事者에 의하여 指定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兩協會中 어느 쪽인가가 當事者中의 어느一方으로부터 仲裁申請을 接受한 날로부터 28日 이내에 當事者が 合意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仲裁場所는 被申請人의 나라로 한다. 그러나 兩協會는, 當事者中의 어느一方으로부터 兩協會中 어느 쪽인가에 대하여 申請이 있으면, 仲裁場所를 申請人의 나라로 할 것을 合意할 수 있으며, 兩協會間의 그러한 合意는 當事者를 拘束한다. 前記의 申請日로부터 28日 이내에 兩協會間의 合意가 이루어 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仲裁場所는 被申請人의 나라로 한다.

② 日本海運集會所가 마련한 標準仲裁條項

“Any dispute arising from this charter (or Agreement) shall be submitted to arbitration held in TOKYO by the Japan Shipping Exchange, Lt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Maritime Arbitration Rules of the Japan Shipping Exchange Inc.” and the award given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on both parties.

③ 日本國際商事仲裁協會의 標準仲裁條項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

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settled by arbitration in Japan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The award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④ 日·美商事 仲裁決定에서 권장하는 仲裁條項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pursuant to the Japanese-American Trade Arbitration Agreement, of September 16, 1952, by which each party here to is bound.

⑤ 日本 國際商事仲裁協會와 英國런던 商業會議所 및 런던 仲裁裁判所間의 仲裁協定이 권장하는 仲裁條項

All disputes that may arise under or in relation to this contract shall be submitted to arbitration under the rules in force at the date of this contract of (a) the London Court of Arbitration if the arbitration is to be held in the United Kingdom or (b) 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if the arbitration is to be held in Japan.

If the place of arbitration is not so designated by the parties or is not agreed by them within 28 days from the date on which a demand for arbitration is received by the court or the Association from either party, the place of arbitration shall be the country of the Respondents. Provided that the court and the Association may agree, on the application of either party to the court or the Association, that the place of arbitration shall be the country of the claimants, such agreement between the court and the Association being binding upon both parties. Failing such agreement between the court and the Association Within 28 days from the date of the said application, the place of arbitration shall be the country of the Respondents.

위에서 보다시피 韓國과 日本의 仲裁條項은 거의가 商事仲裁 規則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日本에서는 海運만은 別途의 海事仲裁規則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시피 高度의 專門技術을 必要로 하는 技術仲裁를 一般商事仲裁에 委任시키고 있는 現實을 脫皮하여 專門技術士가 本質的 機能을 되찾는 視點에서 技術仲裁를 獨立시키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國際間의 技術協力增進傾向에 隨伴되는 契約紛爭에 對備하는 一方途로서 技術士의 本然 義務를 갖게 될 것이다.

5. 獨立된 國際技術 仲裁機關創設의 促求

現今까지 專門技術士가 技術仲裁를 위한 獨立된 國際 機構의 創設을 提案했다는 報道를 들은 바는 없지만 既存機構인 FIDIC에 技術仲裁를 위한 傘下機構를 두어 技術問題에 關聯된 모든 것은 仲裁를 包含해서 技術士가 스스로 解決하는 自覺心을 이르켜야 할 때가 온것 같다.

即 國際間에 技術協力은 漸次로 增大하고 있고 이에 隨伴되는 契約紛爭도 比例한다고豫想되므로 技術仲裁는 技術士自身의 일로 우리가 解決하자는 것이다.

参考로 摘記하건데 표-4는 仲裁에 關한 國際協約 事項의 最新目錄으로서 國際間의 商去來上 또는 技術協力上 留意해 둘 事項일 것이다.

6. 結 言

韓國의 大韓商事 仲裁院과 外國 및 國際機關과 仲裁協定 締結된 나라는 11個國으로서 日本

은 23個國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도 漸次擴大해 가고 있으나, 國際技術協力에 直接, 間接으로 參與하고 있는 專門技術士가 이에 對한 關心度를 提高시켜 앞으로 誕生할 것으로 期待되는 技術仲裁의 獨立機構의 創設促求에 이바지 하고자 小生의 少考를 적어본 것이다(1983.10.31 脫稿)

仲裁에 關한 國際協約 事項 目錄

- 1) Geneva Protocol on Arbitration Clauses(仲裁條項에 관한 제네바 議定書) (1923年 9月 24日)
- 2) Geneva Convention on The Execution of Foreign Arbitral Awards(外國仲裁判定의 執行에 관한 제네바 協約) (1927年 9月 26日)
- 3)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外國仲裁 判定의 承認 및 執行에 관한 協約) (1958年 6月 10日)
- 4) Resolu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國際商事仲裁에 관한 國際聯合決議文) (1958年 6月 10日)
- 5)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一方國家와 他方國家國民의 投資紛爭解決에 관한 協約) (1963年 3月 23日) (Washington協約)
- 6)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Vienna Convention) (國際商品 買賣契約에 關한 UN協約)
※ 1980年 4月 11日 奧地利 Vienna에서 일련 國際商品 買賣契約에 관한 國際聯合會議에서 採擇한 것으로 UN本部에서 加入 促進中에 있으나, 우리나라는 現在 加入 檢討中에 있음.
- 7) 「Uncitral Arbitration Rules」(1976. 4. 28 議決, 1976. 12. 15 勸告決議案 採擇함) (全文41條)